

1. 주요 개정 내용

□ 자율정정 대상 및 항목 확대(제26조 제2항)

○ 전자통관심사(자동수리)건에 대하여 자율정정 제외항목을 19개에서 13개 항목*으로 축소

* 수출화주, 제조자, 거래구분, 환급신청인, 품명,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기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 “신고가격”은 자율정정 제외항목이나 정정 전후 가격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자율정정 허용

○ 수출신고 정정 신청하는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업체인 경우 수출신고 모든 항목에 대해 자율정정 허용

□ 전자상거래 등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제27조 제1항)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의2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 신고 취하시 증빙서류 제출 생략

□ 외국 운항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무역선이 해외에서 매각되어 동 선박이 국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는 경우 수출신고자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제34조의2)

○ 선박말소 신청시 수출신고필증 뿐만 아니라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로도 말소등록이 가능하므로 신고의무 사항 삭제

2. 시행일자 : 2021. 1. 4.

3.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게재

●병무청고시제2021-1호

2022년도 사회복지요원 배정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병 무 청 장

2022년도 사회복지요원 배정기준 등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 병역법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 병무청 사회복지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2022년도 활용 가능한 사회복지요원 소집대상 자원 범위 내에서 필요인원 전원 배정한다.

나. 출·퇴근 복무(복무기관에서 운행하는 출·퇴근 차량을 포함)가 가능한 지역 내 복무기관에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이 사회복지요원 봉급 등 인건비를 확보하여 요청한 경우 요청한 인원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라. 임무와 관련 없는 단순노무분야, 단속분야 등 복무 부적합 분야가 아니어야 하며, 제품생산, 이 용권 판매 등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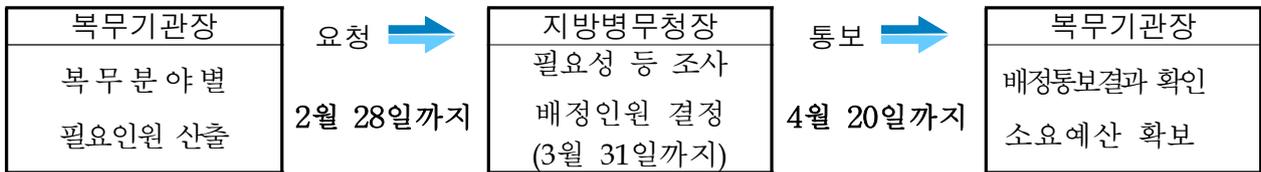
3. 배정순위

-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한다.

< 사회복지요원 배정 순위 >

복무기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무분야					
사회서비스 업무	사회복지	1	2	3	4
	보건의료		5	6	7
	교육문화 환경안전		8	9	10
행정지원 업무			11	12	13

4. 배정절차



가. 복무기관장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지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후 사회복지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나. 지방병무(지)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21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지)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21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지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 유의사항

가. 2022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2021년 1월 15일까지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봉급 등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예산부담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소방청고시제2020-21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1월 4일

소 방 청 장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점검실적 중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수수료

종류	적용대상	수수료(원)
1종	연면적 5,000㎡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2,200
2종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2,700
3종	연면적 20,000㎡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4,400
4종	연면적 20,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4,900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20-1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기 상 청 장

기상분야 국가표준(KS) 제정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순번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1	제정	KS I ISO 19289	공기질-기상학-기상관측소에 대한 관측장소 분류

※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2. 제정 사유

- KS I ISO 19289 : 국제표준(IS)에 부합한 국가표준(KS) 도입·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 I ISO 19289 : ISO 19289:2015(대기질-기상학-지상관측소에 대한 관측장소 분류)를 국가표준(KS)으로 신규 도입하여 기상측기 센서들에 적합한 관측환경(관측장소) 조건을 규정

부칙: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기상청고시제2020-18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기상분야 국가표준(KS)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4일

기 상 청 장